|  |
| --- |
| 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 |
| 원 산 지 소 명 서 |
| 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“를 기재합니다. (2쪽 중 제1쪽) |
| 수출자∙생산자 |
| 1.수출자 | 상 호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| 성 명 |  | 전화/팩스번호 |  |
| 주 소(전자우편주소) |  |
| 2.생산자 | 상 호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| 성 명 |  | 전화/팩스번호 |  |
| 주 소(전자우편주소) |  |
|  |
| 물 품 명 세 |
| 3.품명/규격 |  |  | 4.품목번호(HS No.) |  |
| 5.물품가격 | 가격조건 | 공 장 도가격(EXW) [ ]본선인도가격(FOB) [ ] | 6.원산지결정기준 |  |
| 금 액 |  | 7.자유무역협정명칭 |  |
| 8.주요생산 공 정 |  |
|  |
| 원재료명세서 |
| 9.연번 | 10.재료명 | 11.품목번호(HS No.) | 12.원산지 | 13.가 격 | 14.공급자(생산자) |
| 수 량 | 가 격 |
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
|  |  |  |  |  |  |  |
| 15.합 계 | 원산지재료(국산) |  |  |  |
| 비원산지재료(수입산) |  |
| 합 계 |  |
|  |
|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|
| 16.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|  예 [ ] 아니오 [ ] | 17.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| 예 [ ] 아니오 [ ] |
| 18.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|  예 [ ] 아니오 [ ] (부가가치비율 : % ) |
| 19.결합기준 |  예 [ ] 아니오 [ ] | 20.특정공정기준 | 예 [ ] 아니오 [ ] |
| 21.역외가공기준 |  예 [ ] 아니오 [ ] | 22.최소기준 적용여부 | 예 [ ] 아니오 [ ] |
| 23.누적기준 적용여부 |  예 [ ] 아니오 [ ] | 24.직접운송 여부 | 예 [ ] 아니오 [ ] |
| 25.기 타 |  예 [ ] 아니오 [ ] | 26.원산지 결정 | 충족 [ ] 불충족 [ ] |
| 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. 작 성 자 : (서명 또는 인) 직 위 : 상 호 및 주 소 : 작 성 일 : 년 월 일 **○○세관장(○○상공회의소 회장)** 귀 하 |
|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 |

|  |
| --- |
|  (2쪽 중 제2쪽) |
| 작 성 방 법 |
| 항 목 | 작 성 내 용 |
| 1.수 출 자 | ㅇ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번호, 회사주소(전자우편주소  포함)를 기재합니다. |
| 2.생 산 자 | ㅇ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전화 및 팩스번호, 회사  주소(전자우편주소 포함) 등을 기재합니다.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. |
| 3.품명/규격 | ㅇ 물품의 품명, 모델명,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. 예) TV : ○am○○ng ○○-1234 ; ○○ TVㅇ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. |
| 4.품목번호(HS No.) | ㅇ 물품의 품목번호(6단위)를 기재합니다. |
| 5.물품가격 | ㅇ 가격조건 : 본선인도가격(FOB) 또는 공장도거래가격(EXW) 중 해당하는 것에 “√” 를 기재합니다.ㅇ 금 액 :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.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. |
| 6.원산지결정기준 | 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원산지결정기준 | 기재방법 |
| 가. 완전생산 물품 | - WO |
| 나. 세번변경기준 - 2단위 세번변경기준 - 4단위 세번변경기준 - 6단위 세번변경기준 | - CC- CTH- CTSH |
| 다. 부가가치기준 -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-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-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-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| - BD- BU- MC- NC |
| 라. 결합기준 -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 동시에 충족한 경우 | 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- CC(CTH또는CTSH) + SP- BD(BU, MC 또는 NC) + SP- CC(CTH또는CTSH) + BD(BU, MC 또는 NC) + SP |
| 마. 특정공정기준 | - SP |
| 바. 역외가공기준(개성공단 생산물품) | - OP |
| 사. 기타기준 | - Other |

ㅇ 결합기준 기재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. 예) -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% 이상 : CTH + BD 35% -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%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 될 경우 : BU 30% + SP |
| 7.자유무역협정명칭 | 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. 예)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: 한-아세안 FTA |
| 8.주요생산공정 | ㅇ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. 예)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: 면사 85%, 합성사 15%로 면직물 제조(3m×100m) ② 날염 : 면직물에 국내 ○○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: 남성용 셔츠 제작(50Pcs) |
| 9.연 번 |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. -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. |
| 10.재 료 명 |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. |
| 11.품목번호(HS No.) | ㅇ 원재료의 품목번호(6단위)를 기재합니다. |
| 12.원 산 지 | ㅇ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. |
| 13.가 격 |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. 다만,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. |
| 14.공급자(생산자) | ㅇ 원재료의 공급자(생산자)의 상호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. |
| 15.합 계 | ㅇ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 |
| 16.~25.원산지기준 | ㅇ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. 예)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“예 [√]”로 기재합니다.ㅇ 19 ~ 23 란에 “예 [√]”로 기재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|
| 26.원산지결정 | ㅇ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“충족”에, 불충분한 경우에는 “불충족”에  “√”를 기재합니다. |
|  |